

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 이내
기관·단체명 (법인명)		법인등록번호 ※ 법인인 경우에만 적 습니다.	
대표자 성명		팩스번호	
전화번호			
주소			
기관·단체의 종류			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